



서대문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성별
영향분석평가

2012. 3. 16일자로 시행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의뢰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

구분	자치법규명	담당부서	주요 개정내용	해당부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
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지적과	1. 제 개정이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 일부 조항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 위원의 구성, 직무, 임기 등 운영 사항을 보완 (안 제2조제2항) - 부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에서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 ○ 위원 위촉 조항을 정비 (안 제3조) - 위촉위원은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 신설 - 구청장이 위촉하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한국감정원 직원” 삭제, “구의원” 및 “시민단체” 추가 신설 ○ 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척근거 기준을 마련 (안 제3조의2, 제5조의2)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1조~제12조, 부칙 제2조 등)	해당부서 의견 없음 <별첨>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서

나. 분석평가책임관 검토의견

구분	자치법규명	분석평가책임관 최종의견
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 자체개선안 동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에 대한 검토결과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자체개선안에 동의

- 붙임 : 1.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서 1부.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 1부.
 3.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

주무관 **고동희** 여성정책팀장 **나승임**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복지문화국장 06/30 **대박정숙**

협조자

시행 여성가족과-28382 () 접수 ()
 우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 http://www.sdm.go.kr
 전화 1689 /전송 02-330-1624 / / 부문공개(5)